##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14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김용태·강대식·최형두

강선영 • 유용원 • 정동만

한기호 • 박충권 • 백종헌

곽규택 • 서지영 • 조은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에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생활·진로설계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법률 제 호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7의 제목 중 "등"을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2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한다.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u>·</u>		
<u>등</u> ) <u>&lt;신 설&gt;</u>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		
	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		
	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		
	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		
	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u>할 수 있다.</u>		
<u>①</u> (생 략)	<u>②</u>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③제2항에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			
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	<u>④</u> 제3항에		
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